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
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등 일부개정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”를

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하고,

제34조제1항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”를

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하며,

제88조의1 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”를

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

생활보장수급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5조 삭제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<개정 2014.12.30.>